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보완하고, 피해아동 등이 통지받는 결정 범위를 확대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법률 제14172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에 따라 변경된 일부 용어의 자구를 수정함

3. 주요내용

- 판사가 결정서에 서명날인하는 중요 결정을 피해아동도 빠짐없이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 임시조치·보호처분·임시보호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집행한 이후에 그 결정이 변경된 경우에, 기존에 집행을 담당한 집행기관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5조의2)
- 임시조치가 효력을 잃은 때에도 대응하는 검찰청에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송부하도록 함(안 제9조제1호)
- 임시조치가 행하여진 사건을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등의 이유로

임시조치가 그 효력을 잃은 때, 해당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10조)

- 행위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심리기일 소환장 송달시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보호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제3항)
- 피해아동보호명령 수탁기관에 대한 비용부담의 규정을 두고, 수탁기관에 보고의무를 부여함(안 제87조)

4.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과 같음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3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결정(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제외한다)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아동, 법정대리인(아동학대 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 규칙 제13조 및 제23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 제52조제1항,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보호명령 또는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때에는 수탁기관의 장 또는 수탁 연고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법 제52조제1항,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보호명령에 따라 위탁된 피해아동에 관하여 이송결정·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때에는 그 수탁기관의 장 또는 수탁 연고자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법 제52조제1항,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보호명령이 계속 중인 피해아동 및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계속 중인 피해아동에 관하여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결정, 피해아

동보호명령의 연장·취소·변경결정 또는 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03조,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수탁기관의 장 또는 수탁 연고자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임시조치결정을 한 후에 이송·보호처분결정을 하거나 그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결정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할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결정을 한 후에 그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결정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할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 이송결정·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거나 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결정 또는 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03조,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할 경찰서의 장이나 구치소의 장 또는 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④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후에 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결정 또는 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03조,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할 경찰서의 장이나 구치소의 장 또는 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의 “임시조치”를 “법 제36조제1항제4호, 제5호의 보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하고, 임시조치”로 한다.

제9조제1호의 “청구를 기각한 때 또는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시조치가 취소된 때”를 “청구를 기각한 때,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임시조치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은 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임시조치의 청구”를 “임시조치의 청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항 중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 규칙 제13조 및 제23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를 “법정대리인, 변호사”로 하며, 같은 조의 제6항 중 “행위자”를 “해당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 행위자”로 한다.

제13조제2호의 “있고,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선보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위탁·유치된 행위자의 소환”을 “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탁·유치된 행위자”를 “수탁·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변호사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을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54조 제1항 중 “법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법 제36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55조 제3항 중 “소환하여”를 “소환하고,”로 하며, “있고”를 “있으며”로 한다.

제76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부분 상의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제87조의 제목 “수탁기관의 지정”을 “수탁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은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보호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피해아동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이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명령의 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의 수탁기관에 그 집행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88조제3항 중 “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에게”를 “구청장·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 ② (생략) <신설>	제4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3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결정(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제외한다)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아동,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 규칙 제13조 및 제23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4항----- ----- -----.
제5조(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5조(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u>④ 법 제52조제1항,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보호명령 또는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u>

<신 설>

령을 한 때에는 수탁기관의 장 또는 수탁 연고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52조제1항,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보호명령에 따라 위탁된 피해아동에 관하여 이송결정·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때에는 그 수탁기관의 장 또는 수탁 연고자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법 제52조제1항,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보호명령이 계속 중인 피해아동 및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계속 중인 피해아동에 관하여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결정,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취소·변경결정 또는 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03조,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수탁기관의 장 또는 수탁 연고자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신 설>

① 임시조치결정을 한 후에 이송·보호처분결정을 하거나 그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결정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할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보호처분결정을 한 후에 그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결정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할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 이송결정·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거나 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결정 또는 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신 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03조,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할 경찰서의 장이나 구치소의 장 또는 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후에 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결정 또는 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03조,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할 경찰서의 장이나 구치소의 장 또는 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

제8조(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

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② ~ ③ (생략)

제9조(기록등의 송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청구 사건의 경우 청구를 기각한 때 또는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시조치가 취소된 때

2. (생략)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그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① -----

----- 법 제36조제1항제4호, 제5호의 보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하고, 임시조치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기록등의 송부)

(생략)

1. ----- 청구를 기각한 때, 임시조치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임시조치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은 때

2.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

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선보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제18조(위탁·유치된 행위자의 소환)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임시조치에 의하여 위탁·유치된 행위자가 이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때에는 그 수탁·유치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청사 내에서 행위자를 감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7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① ~ ③ (생략)

----- 있다는 것

제18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① ----- 수탁·유치
----- 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임시후견인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 아동, 변호사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임시후견인, 임시후견인이 될 자 등의 의견을 구술 또는 서면 등 상당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다.

⑤ ~ ⑧ (생략)

제54조(집행상황보고)

①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5조(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

① ~ ② (생략)

③ 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취소·종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피해아동·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고, 보호처분의 종류를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④ -----

---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54조(집행상황보고)

① ----- 법
제36조제1항 각 호 -----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소환하고,

-----있으며,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76조(소환)

① ~ ② (생략)

③ 행위자에게 제1회 심리기일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함께 송달한다. <후단 신설>

④ (생략)

제87조(수탁기관의 지정)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소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이 경우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상의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8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은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보호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피해아동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이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명령의 이

<신 설>

제88조(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

① ~ ② (생 략)

③ 판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 연고자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에게 연고자 등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의 수탁기관에 그 집행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피해야동 및 그 보호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88조(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구
청장·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1609